

창원지방법원 2024. 11. 25 선고 2024가단165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18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5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. 2. 27. 접수 제80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황정언

별지